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지방회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공공자금 운용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고 약정 이자율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금고 약정 이자율' 공개 근거 마련(안 제48조제5항제5호 신설)
 - 「지방회계법」 제38조제2항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중요 공개사항을 정한 제48조제5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제4호에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약정 이자율' 추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대통령령 제 호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5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약정 이자율”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8조(현행과 같음)
1.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업무 약정기간	1. (현행과 같음)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2. (현행과 같음)
3.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3. (현행과 같음)
4. <u>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이</u> <u>정하는 사항</u>	4 <u>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약</u> <u>정 이자율</u>
5. <u><신 설></u>	5. <u>(현행 제4호에 기재된 사항)</u>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연 락 처	(044) 205 - 3946